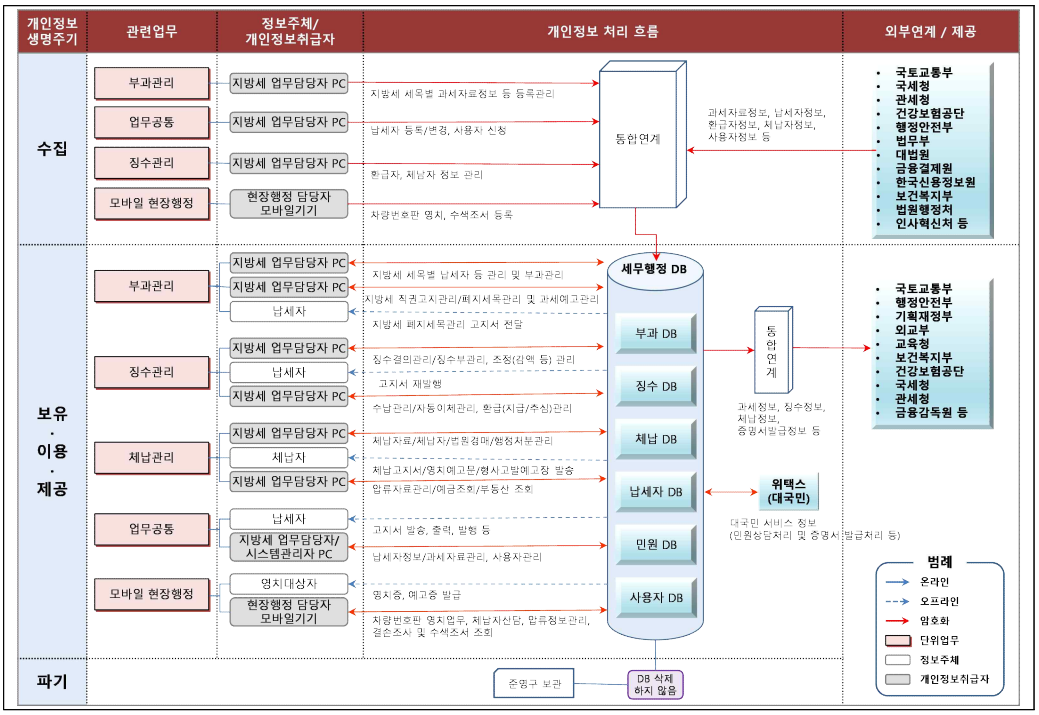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대진정보통신(주)</td><td>평가
기간</td><td>2026.06.05
~
2026.06.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
• 첨단 정보기술 적용,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
• 지방분권, 전국 고른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무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현</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개인정보파일개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방세) 담배소비세관리	3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행정안전부, 관세청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지방세) 등록면허세관리	167,643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면허명, 면허증,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허가번호	-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자동차세관리	123,261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차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장애정보	-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재산세관리	215,732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전자납부번호, 물건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주민세관리	196,143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방소득세관리	44,48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전자납부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관리	342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취득세관리	169,979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전자납부번호		취득세 부과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279,739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	금융결제원	지방세 수납 관리

			락처, 직장주소, 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과세정보		
	(지방세) 감액관리	53,433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사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과세정보	-	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
	(지방세) 환급관리	67,94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환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관세청, 시금고은행, 국세청	지방세 환급 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7,766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직업,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체납금액, 과세정보	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지방세 체납 관리
	(지방세) 압류관리	34,03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증권보유좌수, 보유액, 압류내역, 차량번호, 체납금액, 체납자지분, 소유지분율, 임차금액, 압류금액, 추심금액, 예금금액, 보험금액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지방세 압류 관리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20,843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신용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법무부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지방세) 납세자관리	207,160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과세정보	-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지방세) 행정제재 관리	511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체납정보	-	행정제재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관리	- (법인 정보만 존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과세정보, 재산정보	-	세무조사 대상 관리 (법인 정보만 존재)

<table>
<tr>
<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
<td colspan="2">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d>
</tr>
<tr>
<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
<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
<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3장)의 8개 항목 제외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
</tr>
<tr>
<td>주요 평가기준</td>
<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
</tr>
</table>

<table>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일부 위탁사 공개 누락 개선(개선조치 완료)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개선(개선조치 완료)</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td></tr>
</table>